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설명서 설명·교부확인서

(3쪽 중 2쪽)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연장” 은 소속된 관리부대에 부양가족 수에 적합한 관사가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별표3제4호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환유예” 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환유예기간 중 새로운 상환유예 사유가 발생하면 연속하여 적용합니다. 연장과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관리부대로 신청하여야 하며 주거지원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 유예기한 : 확인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구분	상환 유예 사유	상환 유예 기한
1호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 초과 파견자가 현재 임대차주택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 부양가족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10조제1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
2호	·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부대로 전속 명령을 받았거나 전속 예정이어서 일시적으로 주택임대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 계약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해당사유 종료 시 (상환유예자 포함, 단, 최대 6개월 이내)
3호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만료일자와 세입자 입주 계약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단, 임대인과의 계약기간 연장합의서와 관리부대장이 발급한 연장추천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주택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 (상환유예자 포함)
4호	· 군인이 사망으로 제적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적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유예하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총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전·공상 등의 사유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사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지원기간 중에는 주거지원보증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적일로부터 최대 1년
5호	· 방위사업청 소속 획득전문인력 중 자군에 순환보직 중인 자	해당 사유 종료 시
6호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령일 기준 자녀가 재학 중인학교의 졸업연도 2월 말
6호의2	· (서울특별시, 경기도 과천·안양·고양·광명·김포·평택시 외 지역 거주자)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단, 현 거주지에서 학교로의 등·하교를 요하지 않는 경우(기숙형 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1년을 초과하는 파견 명령일 기준 당해연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자녀(당해연도에 진급 예정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단, 중2 자녀가 있는 자 중 명령일이 4/4분기인 경우 다음연도의 자녀 학년을 기준으로 유예기한을 적용한다. - 6호의2에 따른 상환유예 적용 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고등학교 2·3학년 진급 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이때에는 새로운 전속 또는 파견명령을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제24조제3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졸업연도 2월 말
7호	· 그 밖에, 사안의 특수성·긴급성에 따라 각 군 등의 장, 관리부대장이 심의·의결하여 승인된 경우	관리부대에서 정한 기한

* 제3호나목의 관사 퇴거 유예기한 중 2호, 4호, 6호, 9호, 10호, 11호를 상환유예기한으로 준용한다.

** 상환유예 사유 중 1호, 2호, 3호는 해당 유예 적용시 다른 사유에 의한 추가 유예를 할 수 없다.

